

유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을 위반한 유선사업자에 대하여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 및 제22조(의견청취)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10. 11.

속 초 해 양 경 찰 서

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10. 11. ~ 2024. 10. 25. (14일간)
3. 대상업체

상호 (대표자)	영업소재지	처분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근거	예정된 처분내용
신**관광개발(주) (김*구)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동 383-1	개선명령 미이행(4차)	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7호	면허취소

4. 의견제출

- 가. 기 한 : 2024. 11. 5.(화)까지
- 나. 장 소 : 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(민원동)
- 다. 문의처 : 033-634-2549

5. 유의사항

- 가.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(행정절차법 시행규칙)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속초해양경찰서장 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